

---

## 현수막 게시 관련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대한 안내

---

선거관리위원회는 현수막 게시에 관한 「공직선거법」 제90조의 규정, 한계, 운용방향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「공직선거법」 제90조 제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의 게시를 금지하고 있으며,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또는 그 명칭·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.

한편, 같은 조 제2항은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「정당법」 제37조 제2항에 따라 게시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현수막은 허용하면서, 이 경우에도 해당 현수막의 내용에 특정 정당·후보자에 대한 지지·반대 표현이 있는 경우는 금지하고 있습니다.

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당·시민단체 등은 선거와 정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현수막을 이용해 표현하고자 하나,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의 게시를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는 「공직선거법」 제90조 때문에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침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.

그러나, 법 집행기관인 우리위원회로서는 현행법과 판례에 따라 법을 운용해야하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.

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위원회는 헌법 정신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,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볼 때 특정 정당·후보자의 명칭·성명이 쉽게 인식되고 표현 내용이 특정 정당·후보자를 직접적·명시적으로 지지·반대\*하는 경우에 한하여 「공직선거법」 제90조에 따라 제한하고, 그 외의 경우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고 있으며, 이 기준은 여·야를 막론하고 그 대상이 누구든지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.

한편, 우리위원회는 「공직선거법」 제90조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판단 하에, 해당 규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세 차례('13년, '16년, '21년)에 걸쳐 국회에 제출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, 입법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.

사회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「공직선거법」 제90조가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조속히 개정되기를 희망합니다.

붙임 : 「공직선거법」 제90조 관련 시설물 제한·가능 사례 1부.

---

\* 지지·반대에 해당하는지는 표현된 문구, 전체적 맥락,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